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특화체육시설 설치·운영의무 〉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75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노인특화체육시설 설치·운영의무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송기현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1. 16.
3. 회 부 일: 2025. 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노인특화체육시설 설치·운영의무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특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및 제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노인특화체육시설)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이나 기구를</u>

	<u>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u>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u>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u>	① <u>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 <u>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6조의2</u> ----- ----- ----- ----- ----- -----.

다. 검토의견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 유형 중 하나로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특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특화체육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시설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 노인의 체육활동 기반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비용을 지원(지자체 자본보조)하고 있음.¹⁾²⁾

1)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도 현행법상 노인특화체육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노인특화체육시설 지원 사업(2022년도 예산까지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되었던 세부사업 ‘체육진흥시설지원(5151-300)’ 중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은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2023년도 예산부터 지방이양되었으므로 국가사업으로 전환시 재원을 재이양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신중검토 의견임.

2) [참고자료1]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 ‘노인특화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향후 유아, 장애인 등 인구특성별 특화 체육시설을 모두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등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기타의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을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
- 한편, 노인 체육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 대신 현행법령의 ‘생활체육시설’에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관련 현행 규정]

법률	현행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다른 법률로 정한다.</u>
「체육시설법」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 참고로, 제22대 국회의 노인특화체육시설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노인특화체육시설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개정안 (의안번호)	주요 내용(조항)	발의일 (대표발의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0757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u> (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25. 1. 16. (송기헌의원)
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0757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u>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u> (안 제6조의2 신설 등).	'25. 1. 16. (송기헌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07576)	○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정의하고, <u>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함</u> (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 노인특화 체육시설: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을 갖추어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5. 1. 16. (송기헌의원)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초고령화 사회 대응) 고령층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을 통해 어르신 스포츠 활동 장려 및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도모
- (생애주기 맞춤 지원) 수영장·체육관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 지원유형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실내체육시설인 ‘시니어 친화형’ 지원모델 신규 개발·보급(‘23년~)

□ 사업개요

- (주요내용) 파크골프장, 게이트볼 등 시니어 친화 체육시설과 건강측정실·메디컬룸 등 건강증진 특화시설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실내체육시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일부 지원
- (지원방식) 지자체 자본보조, 전년도 사전공모*
 - * (절차) 공모사업 설명 → 지자체 안내 → 신청접수 → 평가·발표
- (지원규모) 1개소당 4년간 30억 원*, 정액지원
 - * 1년 차 2억 원(설계비) 교부 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현황

구분	'23년	'24년	'25년
예산	6억	56억	136억
지원량	신규 3개소	신규 8, 계속 3개소	신규 20, 계속 11개소

□ 시설유형 및 기능

- (지원모델) 파크골프, 탁구, 배드민턴,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 종목시설과 물리·재활치료가 가능한 메디컬룸 등으로 구성 *근력 및 인지 훈련 동시 진행

